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35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김원이 · 서삼석 · 허성무
신정훈 · 문진석 · 박균택
김준환 · 김태선 · 김기표
이해식 · 문금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주요 경쟁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함. 하지만,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함. 아울러, 자금을 출자 받은 증손회사가 실제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도 규정하여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함.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첨단기업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2조, 제24조의2).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보유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 손자회사가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공동출자법인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음(제34조의2).

다. 「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전략

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에도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처분 가능(제34조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첨단기업”이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첨단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①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이 제2조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첨단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첨단기업의 확인 및 취소, 이를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출자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그 공동출자법인이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보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할 것(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손자회사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을 포함)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이 첨단전략산업기금 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출자를 받았을 것
4. 공동출자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할 것

5. 공동출자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2항제2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 아닐 것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업 외에 다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손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특례를 의결한 날의 다음해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재심사하여 특례 유지 또는 취소 등의 의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례 유지 또는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출자법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 공동출자법인의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집합투자기구”의 정의는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그 밖에 특례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보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전략산업특례기업”이라 한다)을 임차인으로 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전략산업특례기업 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의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 그 산업용지를 분할(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첨단기업”이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u>
<u><신 설></u>	제24조의2(첨단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① <u>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이 제2조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첨단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③ <u>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u>

<신 설>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첨단기업의 확인 및 취소, 이를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출자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그 공동출자법인이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 전략기술 보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할 것(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손자회사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을 포함)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이 첨단전략산업기금 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출자를 받았을 것

4. 공동출자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할 것

5. 공동출자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 아닐 것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한 공동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
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
스업 외에 다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손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외
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
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
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일반지
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
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
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특례를 의결한 날의 다음해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재심사하여 특례 유지 또는 취소 등의 의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례 유지 또는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출자법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 공동출자법인의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

<신 설>

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집합투자기구”의 정의는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특례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보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전략산업특례기업”이라 한다)을 임차인으로 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

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
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
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
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
사업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
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
을 받아 산업용지(해당 산업용
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자는 전략산업특례기업 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의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 그 산업용지를 분할(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